

입장권 판매 및 발행 일반규약

제1조 (정의)

- ① "실시간예매 연동"이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과 전당이 지정한 판매 대행사 간에 입장권 판매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좌석정보 및 판매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시간 예매연동 판매망"이란 이에 따라 구성된 유통시장을 뜻한다.
- ② "기획사 요청 발권"이란 일반 고객이 구매한 입장권 이외에 특판, 초대권과 같이 대관자가 직접적으로 발권을 요청하는 방식 또는 이에 따라 발권된 입장권을 뜻한다.
- ③ "기획사"란 대관자 또는 대관자가 지정한 입장권을 관리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 판매대행사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 ④ "판매대행사"란 대관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를 의뢰받은 자로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예매처 등에서 입장권을 유가로 유통하는 회사를 뜻한다.
- ⑤ "좌석 보류(홀드)"란 입장권의 발권 없이 해당 좌석을 인터넷 또는 콜센터 등의 경로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 또는 보류하는 행위 또는 이에 따라 보류된 좌석을 뜻한다.
- ⑥ "좌석 할당"이란 일부 또는 전체의 좌석을 실시간 예매연동을 통하지 않고 특정 판매대행사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좌석 할당 판매대행사"란 실시간 예매연동을 통하지 않고 좌석 할당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대행사를 뜻한다.

제2조(입장권 판매계약 체결)

- ① 대관자는 전당 및 실시간 예매연동 판매대행사와 각각 "입장권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당 및 선택한 판매대행사와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 ② 대관자는 판매대행사와 별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당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관자는 계약서 및 대관규약에 위배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배될 경우 전당은 입장권의 판매 및 발행을 중단, 보류, 금지할 수 있다.
- ③ 본 사항은 대관자뿐만 아니라 대관자의 공동주최사, 제휴 판매회사(예: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타 입장권 판매 관련 하도급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④ 대관자는 좌석 할당 판매대행사와 입장권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하여 체결 후 제7영업일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전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할당 판매대행사의 정보 : 판매대행사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2. 할당 좌석이 표기된 좌석 배치도

- ⑤ 본조 제4항에 따라 대관자가 할당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할당 비율이 70%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수수료)

- ① 대관자는 전당 대표시스템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분에 대하여 수수료(이하 '입장권 판매수수료'라 한다)를 별표1에서 규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전당에 지불한다. 다만,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제8조(입장권판매금의 정산)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 ② 전당은 전당의 대표시스템이 아닌 다른 발권시스템으로 발권을 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청구이용수수료를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부과시점은 전당이 고시한다.

제4조 (입장권등록)

- ① 대관자는 전당 및 실시간 예매연동 판매대행사에게 의뢰하는 입장권의 좌석 등급, 할인권종, 가격을 전당의 대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청한다.
- ② 대관자는 전당 대표시스템에 입장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부대서류, 해당 행사에 대한 제반 정보를 입장권 판매 시작일 기준 제 7영업일 이전에 전당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입장권의 등록은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 가능하며, 입장권의 판매 개시는 대관자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한 이후 가능하다. 본항을 위반하고 판매대행사나 기타 유통업체를 통하여 티켓을 판매할 경우 전당은 판매의 금지, 대관자의 권한 제한, 티켓의 회수, 입장의 금지, 벌칙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전당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④ 대관자는 모든 행사일과 모든 좌석 등급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전당 및 실시간 예매연동 판매대행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판매가 20%(발권 가능 좌석 수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 행사일이나 특정 좌석 등급을 특정 계약한 판매대행사에게만 제공할 수 없다.
- ⑤ 대관자는 전당 및 계약한 판매대행사에게 고유의 할인권종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기간 제어 할인권종(예: 조기에매) 및 일반적인 할인권종(예: 청소년 할인)은 특정 판매대행사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또한 대관자는 고유의 할인권종 이외에는 입장권 가격을 동일하게 등록 의뢰해야 한다. 이 사항은 좌석할당 판매대행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⑥ 입장권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좌석등급, 할인율, 결제방법, 행사일(동일 행사에 한함)에만 국한되며, 해당 행사일 하루전 오후 5시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2회까지 변경 가능하다. 단, 3회차 변경분부터 전당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입장권등록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동일행사라도 마지막 회에 해당하는 행사

일 경우에는 행사 당일 변경할 수 없다.

- ⑦ 전당 대표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시 전당과 대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환불 정책을 준수한다. (다만,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환불정책 변경시 통보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공연 및 전시시작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 그 이후에는 10% 공제 후 환불
 2. 단, 예매 당일 취소시에는 공연·전시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
 3. 공연·전시 당일 구매할 경우 환불되지 않음

제5조 (입장권의 판매 및 발권)

- ① 대관자는 행사 당일 입장권 판매를 할 경우 전당의 대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의 경우, 전당이 인정하는 판매대행사에게 현장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당은 전당의 대표시스템을 이용한 예매 및 현장 판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마감할 수 있다.
 1. 예매 : 공연은 공연 시작 20분 전까지, 전시는 전시 종료일 1시간 전까지
 2. 현장 판매 : 공연은 중간 휴식 종료시까지, 전시는 전시 종료 1시간 전까지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의 구매자 중 법률 및 행정부령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배우자,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전당의 대표소에서 증빙카드, 증서, 관련 공문서를 제시할 경우 별표2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예매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입장권을 수령하거나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 입장시 행사진행요원이나 대표원에게 상기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시 할인(감면) 금액에 대한 차액을 지불한다.
- ④ 전당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분 중 일부를 문화상품권 또는 전당이 인정하는 상품권, 마일리지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관람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 ⑤ 대관자 및 전당은 고객이 휠체어를 사용하여 관람할 수 있는 '휠체어석'에 대하여 일반 고객을 위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⑥ 오페라하우스 및 음악당 대관자는 대관규약에서 지정한 규정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발권할 수 없으며, 지정좌석권의 경우에는 1좌석 1입장권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⑦ 오페라하우스 및 음악당 대관자는 취학 전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전당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 연령을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당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장권을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행사 당일 미취학 아동의 입장권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고객 민원 및 전당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⑧ 전당은 판매 과정에서 위법사항, 대관규약의 위반사항,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기타 전당 대표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중단되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를 보류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 ⑨ 타 판매대행사의 할당 좌석에 대한 판매 및 발권을 제외하고 오페라하우스 및 음악당 공연에 대한 당일 대표소 현장 판매 및 발권의 권한, 서비스플라자에서의 모든 입장권 판매 및 발권의 권한은 전당에게 있다.

제6조 (교환권 및 하우스티켓)

- ① 교환권의 발행은 입장권의 판매 개시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
- ② 대관자가 교환권을 발행할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전당의 대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하여야 한다. 전당은 대관자가 임의로 교환권을 발행할 경우 해당 좌석에 대한 교환 및 입장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고객 민원 등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초대교환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발권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전에 “초대 교환권 신청서”를 전산 또는 문서로 작성, 전당 대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권한다. 이 때 전당 대표담당자는 초대교환권에 해당하는 지정 좌석권을 우선 발권하여 보관한 뒤 행사 당일 대관자에게 교부한다. 부득이 행사 전에 수령해야 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협의한다.
- ④ 전당은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하여 대관규약에서 지정한 일부 입장권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특판)

- ① 대관자는 기획사 요청 발권을 통하여 우선 발권한 티켓 외에 자체적으로 예약 및 예매 판촉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 및 실시간예매연동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자체 예매 프로그램 (이하 '기획사 예매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자체의 회원, 대관자의 공동주최자의 회원, 협력사의 회원(이하 '해당 회사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1. 기획사 요청 발권을 통하여 입장권을 우선 발권하는 방법
 - 2. 제1항의 기획사 예매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 3.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싱글사인온(SSO)을 통해 전당 홈페이지 또는 실시간 예매연동 판매대행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
- ③ 어떠한 경우라도 대관자는 공연행사의 좌석을 보류(홀드)하고 입장권을 타 판매대행사에 의뢰하여 발권할 수 없다.

제8조 (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 ① 전당은 행사가 최종 완료된 후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행사일 기준 15일 이상의 공연, 30일 이상의 전시 장기 대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사의 입장권등록 시 중간 정산 기준일을 결정하여 전당에 통보해야 한다.
 2. 중간 정산 기준일의 전날까지 종료된 행사에 대한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한다.
 3. 전당은 대관자에게 제3조(수수료)에서 규정한 입장권판매수수료 및 대관료 미납액 확정분을 공제한 해당 행사의 입장권 판매금을 대관료 최종 정산에 포함한다.
- ② 전당은 대관자에게 행사 종료 후 (중간 정산시 중간 정산 기준일 이후) 9 영업일 이내에 해당 행사의 입장권 판매금 정산서를 송부하며, 14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 송부일로부터 판매금 지급전까지 대관자가 해당 정산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당은 이의제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해당 행사 이외에 대관자가 전당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가 있을 경우, 전당은 그 매입채무를 상계처리 후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매입채무가 입장권 판매금액보다 많을 경우, 전당은 입장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전당은 판매대행사가 대관자에게 미지급한 입장권판매금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⑤ 전당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대관자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금 확정시까지 입장권 판매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행사 취소, 조기 종료, 부실 행사, 행사시간 및 내용 변경, 통보 누락 등 행사 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입장권 가격의 변경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환불 · 변경 사항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경우
 3. 입장권의 판매 도중 대관이 취소된 경우, 제9조(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제3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책임 사항이 종료된 후 입장권 판매금을 정산한다.
- ⑥ 본조 제5항의 3과 관련하여 대관자의 귀책으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호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관자는 전당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1. 고객 부담으로 용역이 이루어졌으나 행사 취소에 따라 전당이 고객에게 환급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
 - 가. 환불 무통장 수수료
 - 나. 배송 수수료
 2. 전당의 비용 부담으로 수행된,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될 수 없는 용역 및 재화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
 - 가. 무통장(가상계좌) 결제 수수료 : 건당 400원

나. 발권 수수료

다. 입장권 등록 수수료 : 별표 1의 입장권 등록 및 변경 수수료와 동일

- ⑦ 전당은 본조 제6항과 관련한 수수료를 대관자의 대관료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대관료 환급금이 없거나 본조 제6항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전당이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

- ① 전당과 대관자는 각각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의 민원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각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고객 또는 전당과 대관자 상호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판매가 진행되는 도중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차액에 대한 고객의 민원, 환불, 통보, 다른 판매대행사에 대한 통보의 책임을 진다.
- ③ 전당과 대관자는 행사가 취소될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책임을 진다.
1.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 대관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전당 대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전당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 전당은 전당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전당의 대표시스템을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전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판매대행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예매한 고객에 대한 통보 및 환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입장권 검인 및 발권)

- ① 전당의 대표시스템을 통해 발권한 입장권만 인정되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간 예매 연동 판매대행사에서 발권한 입장권
 2. 허용된 좌석 할당 범위 내의 좌석에 대하여 할당받은 판매대행사에서 발권한 입장권
 3. 대관담당자가 승인한 전시 행사의 입장권. 다만, 대관자는 전시장 사용일까지 대관담당자에게 입장권의 시안 및 사양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특판권, 초대권, 교환권, 잔여석 등 기획사 요청 발권을 통한 입장권을 전당의 대표시스템 또는 실시간 예매연동에 참여한 판매대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발권해야 한다. 다만, 전시 행사를 경우 대관담당자가 승인이 있으면 이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오페라하우스 및 음악당 공연에서 대관자의 귀책으로 입장권의 좌석이 중복되거나 허위 입장권이 발견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전당은 대관자에게 피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의

피해에 대하여 전당은 면책된다.

제11조 (홍보 및 저작권)

- ① 대관자는 대관자 자신이 또는 제3자를 통해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에 전당 및 판매대행사에 대한 안내사항(로고, 예매 홈페이지, 예매 전화번호 등)을 동일한 조건(표기사항, 크기, 위치)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전당 및 판매대행사에 대하여 행사 홍보에 대한 자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다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행사에 대한 저작권 및 수익권이 대관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사용, 수익권이 취득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행사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만일 제3자가 전당을 상대로 청구를 받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여하의 경우에도 전당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전당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자는 전당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의 준수)

- ① 대관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 또는 전당이 현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전당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다.
- ② 대관자 및 계약한 판매대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따라 계약이나 협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래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입장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동법 제19조 1항 1호 위반)
 2. 특정 판매대행사를 배제하도록 합의하는 행위 (동법 동조항 4호 위반)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① 대관 규약에 따라 대관이 취소가 되거나 대관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도 자동 해지되나, 제8조(입장권 판매금의 정산) 및 제9조(예매 및 구매 고객에 대한 책임)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도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② 어느 일방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대관규약 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1 : 수수료율

소구분	구분	기준		부가세포함 전 (공급가액)
입장권 위탁판매 대행 수수료	현금	일반판매금		공연 5%, 전시 2%
	신용카드	일반판매금		공연 7.5%, 전시 4%
	가상계좌	일반판매금		공연 5%, 전시 2%
기획사 발권 수수료	신용카드	특판판매금		공연 7.5%, 전시 4%
	초대권	발권입장권수		공연 150원, 전시 100원
	특판권	발권입장권수		공연 150원, 전시 100원
	교환권	발권입장권수		공연 100원, 전시 무료
환불 수수료	전당지분	환불수입		60%
	대관자지분	환불수입		40%
현장인력 지원비	1일 1회(공연)	지원인력 1인		20,000원
	1일 2회(공연)	지원인력 1인		38,000원
	1일(전시)	지원인력 1인		45,000원
입장권 등록변경 수수료	2회까지	회당		무료
	3회부터 ^{*1}	400석 미만	좌석수	500원
		400석 이상	회차당	
창구이용 수수료 ^{*2}	20일 미만	1창구당	1회	50,000원
	20일 이상	1창구당	1회	30,000원

*1 : 회차별로 변경한 좌석수가 400장 미만일 경우 변경한 좌석수에 500원을 부과함.

*2 : 전당의 매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창구이용 수수료에는 인터넷 사용료를 제외하며, 인터넷 회선의 설치 및 사용료는 해당 판매대행사 또는 대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별표 2 : 법률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할인 기준

구분	대상자	감면율	
		공연	전시
1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소지자 본인 및 동반 1인	50%	100%
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본인 (단, 국가유공자 유족증 수권유족이 부모에 해당할 경우 선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일 경우에도 할인 대상에 포함됨)	50%	100%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본인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가족확인서, 주민등록증 제시의 경우에 한함)	50%	100%
4	1~3급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보호자 1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4호, 2008년 7월 15일 고시)에 의거함	50%	100%
5	4급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1인	50%	100%

※ 위 사항은 대관행사에는 의무사항이 아님

관련근거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3호)의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독립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15조(고궁 등의 이용)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의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 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2호)의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1(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1호) 제3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제4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5.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및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된 장애인은 동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및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6.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의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의 1에 규정된 보호자는 별표2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